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안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보고·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 2023. 12. 1. ~ 2023. 12. 7.(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사.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

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보고·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